

벤처투자법 및 하위법령에 관한 질의·답변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 동 자료는 벤처투자법 설명회(8.5) 당시 오픈채팅방, 유튜브, 현장 질의 등을 모아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행규칙, 고시 등이 공포되기 전에 벤처투자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자료이므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시행규칙 및 고시가 변경될 경우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투자조합

구 분	질 의	답 변
등록요건	1. 신법인 벤처투자법 시행일(8.12) 이전에 구법(벤처기업법)에 따라 신청한 조합도 8월 11일 까지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벤처투자법 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그렇습니다. ☞(근거) 벤처투자법 부칙 제2조의 개인투자조합 GP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법 제12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구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8.11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창업기획자가 GP로서 결성하려는 조합은 LP로 출자하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부터 제4호의 법인을 말하며, 단 한국모태펀드는 미포함)의 출자금액의 합이 조합 결성액의 30% 이내로 맞추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수시납의 경우, 약정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 되는지 약정총액과 무관하게 최초 설립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일시납 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벤처투자조합(출자금총액 20억원 이상)과 같이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 최초 출자금액(설립출자금)의 기준(10억원 이상)을

구 분	질 의	답 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더라도 등록요건에 따라 최초 출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창업투자회사 또는 유한회사형 투자회사(LLC)도 GP로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투사나 LLC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GP가 될 수 없습니다. ☞(GP 자격) 개인, 창업기획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법이 시행되면 종전에 창업기획자가 창투사나 LLC를 경영할 경우, 해당 창업기획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것을 허용하게 되어 이를 혼동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개인이 GP인 조합에 법인도 LP로 출자가 가능한지?	○ 종전과 같이 벤처투자법이 시행되어도 개인 GP인 조합에 법인이 LP로 출자할 수 없습니다.
	5. 8월 12일 이전에 출자자에게 기존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받았는데 8.12일 이후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변경된 동의서	○ 변경된 동의서는 관련 법령명 및 조문 등을 수정한 것이므로 기존 동의서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2 -

구 분	질 의	답 변
	를 새로이 받아야 하는지?	
투자자의무비율	1. 8월 12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조합의 경우 신설된 투자자의무비율이 적용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의무비율 신설은 개인투자조합의 펀드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기존 등록 조합에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존 등록 조합은 8.12일 법 시행 후 이미 50% 이상(창업기획자 GP인 조합은 초기창업자에 50% 이상) 의무투자비율을 이행하였다면 자율투자가 가능하고, 아직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이행하고 자율투자가 가능합니다.
	2. 개인투자조합 GP가 개인이어도 50%를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의무투자를 하면 의무투자 외 자율투자는 상장주, 구주, 프로젝트 다 가능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의 GP가 개인 또는 법인과 무관하게 출자금 총액의 50% 이상 비상장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신규 발행 주식 또는 무담보 CB·BW 등)하면 나머지 50% 미만은 자율투자(구주 인수, 프로젝트 투자 등)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자율투자를 하더라도 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 3 -

구 분	질 의	답 변
		한도는 10% 이내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유투자에 부동산 리츠도 포함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투자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것은 벤처투자법 제1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조합 GP의 행위제한 사항 중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 다만, 부동산투자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라면 위의 2번 답변과 같이 10% 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의무비율에 초기창업자에 50%는 약정 총액 기준인지? 관리보수를 제외한 실제 투자가능 금액의 50%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의무비율은 벤처투자법 제13조1항에서 출자금액의 50%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출자금액은 조합에 실제 납입한 금액(납입 출자금)이 아닌 조합의 규약에 따라 출자이행을 약속한 총액을 의미하므로 약정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 조합 출자금액에 관리보수비용이 포함되어

- 4 -

구 분	질 의	답 변
		<p>있으므로 관리보수비용을 포함한 금액이 투자의무비율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p> <p>예를 들어 출자금액이 1억원인 조합이 관리보수가 존속기간 중 1천만원이면 의무투자금액은 50%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소 5천만원이 되어야 하고 관리보수를 제외한 4천만원만 자유투자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p>
	5. 창업기획자가 GP로서 여러 개의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의무비율은 GP가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을 합산한 비율인지 아니면, 조합별 비율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은 GP가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의 합이 40%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완화하였으나, ○ 개인투자조합은 투자비율만 완화(100→50%)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더라도 합산하지 않고 조합별 5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향후 검토하여 필요시 법 개정을 할 계획임)
행정처분 등	1. 등록취소가 되면 청산, 해산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출자자에게 출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이 등록취소가 되면 반드시 해산 및 청산할 필요는 없으나, 벤처투자법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

- 5 -

구 분	질 의	답 변
		<p>용할 수 없으며 조세특례법상의 소득공제 혜택이 중단되겠습니다.</p>
기타 (규약변경 등)	1. 개인투자조합도 자율투자가 가능해졌는데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혜택이 있는지?	<p>○ 개인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 또는 출자에는 구주를 인수하는 것은 제외되어 혜택이 없습니다.</p> <p>☞(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중</p>
	2. 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도 행정예고된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지?	<p>○ 종전의 『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중기부 고시 제2017-5호)을 폐지하고, 개정 중인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포함할 것입니다.</p>
	3. 8월 12일 이전에 등록된 조합은 규약변경 따로 할 필요없이 50%를 3년 이내 투자하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한지?	<p>○ 투자의무비율 완화(100→50%)로 8월 12일 이전에 등록된 조합은 규약상 목적(본 조합은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투자하여~) 및 투자방법(투자는 투자업체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CB·BW의 인수의 방법에 의한다)에 대해 변경(현행 투</p>

구 분	질 의	답 변
		<p>자업체에 같은 방법으로 조합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p> <p>○ 하지만 규약 변경 없이도 규약의 근거법령인 벤처투자법에서 50% 이상만 의무투자하도록 규정, 시행되므로 나머지 출자금액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그래도 기존 규약을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조합은 규약 변경절차에 따라 변경하고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4. 반기 정기보고는 시스템으로 진행되는지?	<p>○ 신설되는 조합의 반기별 보고(업무 운영상황)는 등록신청하였던 현행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을 통해 매 반기 종료후 익월 말까지 하시면 됩니다.</p>
	5. 개인투자조합의 성과보수를 GP가 아닌 LP 중 투자기업 보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규약상 정의하여 배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p>○ 벤처투자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조합은 GP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성과보수를 받은 GP는 성과보수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p>

구 분	질 의	답 변
		<p>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중요한 역할을 한 LP에게 지급하는 것은 총회를 통해 규약에서 LP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혹은 규약에 규정하지 않고 GP가 받은 성과보수를 해당 LP에게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2. 창업기획자

구 분	질 의	답 변
투자 의무비율	1. 벤처투자조합 외 창업기획자의 고유계정 투자 의무비율 산정시에도 개인투자조합 3년 이상 보유한 창업자의 주식(신주인수당시, 설립 3년 이내 초기기업)을 인수한 경우 투자비율에 포함되는지	○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자 의무비율은 고유계정,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각각 계산합니다.
	2. 설립 3년 이내 초기창업가에게 신주 투자 후, 동일 회사에 후속투자 진행시 설립한지 3년이 초과한 경우라면 후속투자건은 투자 의무비율 산정시 제외되는지 여부	○ 후속투자 시, 해당 기업은 3년이 초과하였기에 초기창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법에서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서 초기창업자의 투자비율이 50% 이상 투자로 변경되었는데 기존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도 이 투자비율이 적용되나요?	○ 적용됩니다. * 법 부칙 제6조(개인투자조합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으로 본다
	4. 엑셀러레이터 등록 이전에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 투자를 진행한 건에 대하여도 엑셀러레이터 본계정 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을	○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후 3년이 지난 날까지 투자실적을 전체투자금액으로 보게 되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구 분	질 의	답 변
	수 있나요?	
행위제한 (행위제한예외 포함)	1. 창업기획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현재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GP로서 출자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 이전 출자한 경우는 행위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부터 적용
	2. 창업기획자를 준비하고 있는 금융회사입니다. 현재 신기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투자조합(「여성전문금융업법」상의)을 만들어 놓은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 이전 출자한 경우는 행위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부터 적용
	3.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존의 창투자 행위제한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개선된 창투자 행위제한의 예외처럼 창업기획자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GP로는 참여가 가능한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로는 불가합니다. 창투사는 창업·벤처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에게 투자와 보육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서 창업기획자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4.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중 경영지배를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

구 분	질 의	답 변
	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데 예외 사항은 없나요?	기창업자에 대한 경영지배는 가능하나 이 경우, 경영지배 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7년 이내에 지분을 전부 매각해야 합니다.
	5. 창업기획자는 금융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 LLC 설립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은행 등을 말합니다. LLC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6. 기존 액셀러레이터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LLC)를 설립하고 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대표이사가 AC, LLC 동시에 대표이사로 운영, 대표이사 외 AC, LLC 겹치는 이사진, 벤처투자조합내 조합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합니다.(현행법상 금지 규정 없음)
기타 (규약변경 등)	1. 창업기획자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 1명 이상 지정해야 하는데 기존 창업기획자도 해당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 이후는 모든 창업기획자에 해당합니다. 투자 및 회수 등 거래에 관한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내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준법감시인 1

구 분	질 의	답 변
		<p>명 이상을 내부적으로 지정하면 됩니다.</p> <p>* 법 부칙 제6조(개인투자조합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창업기획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으로 본다</p>
	2. 준법감시인은 어떤 사람을 지정해야 하나요?	<p>○ 사내이사, 소속직원 중에 선임해야 하며, 소속직원을 선임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p>
	2-1. 준법감시인 선임시 이사회에서 선임하나요?	<p>○ 해당 사안에 대해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창업기획자 업체의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됩니다.</p>
	3.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할 경우,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비율 산정시, 부채총계(유동부채+비유동부채) / 자본총계(자본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 으로 계산하는데 맞나요?	<p>○ 맞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않을 것으로만 나와 있기에 부채총계 / 자본총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p>
	4. 창업기획자가 해외기업에 투자시 일정비율	<p>○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p>

구 분	질 의	답 변
	국내 선투자 등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p>전체 투자금액의 40%이내에서 초기창업자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투자 할 수 있습니다.</p>
	5.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및 소유한 경우 신법 시행에 따라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p>○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는 행위제한에 해당합니다.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1년 안에 처분 할 경우 예외)</p> <p>- 다만, 귀사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이라면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란 기업이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업무에 필요한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토지나 건물)</p>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구 분	질 의	답 변
등록요건	1. 준법감시인 사내이사나 소속직원 중에 선임해야 된다고 하는데 감사도 가능한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준법감시인은 사내이사 및 소속직원 중 투자심사를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로 선임 (고시가 공포되기 전까지 추가 검토할 예정) ○ 창투사 최초등록 시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고, 그 의사록을 제출. 이후 변경 시에는 회사 사규에 따름 ○ 최초등록 시 준법감시인 선임 증빙자료 제출하고 이후 변경시 보고 의무는 없음 다만, 검사 시 그 선임 여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시 유지하여야 함
	1-1. 준법감시인 선임시 이사회에서 선임하나요?	
	1-2. 준법감시인 선임 후 공시 또는 보고의무가 있나요?	
투자의무비율	1. 투자의무비율에서 출자금의 합이 약정총액인가요? 납입액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산 중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에서, "출자금액"이란 "약정총액"을 의미 * (참고사항)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비율 산정 시 그 출자금액은 "약정총액"을 의미
	2. 동일기업 투자한도 20% 변동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내용은 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며, 개별 조합 규약협의 시 반영하는 사항으로 보임

구 분	질 의	답 변
	3. 창투사이면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로 동시에 등록한 경우 투자의무비율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투사이면서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는 투자의무비율에 대한 규정을 각각 준수하여야 함 * 창투사 : 총자산 40% 이상 벤처투자, * 창업기획자 : 전체투자금액(고유계정)의 40% 이상 및 벤처투자조합 자산의 4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투자
	4. 현재까지 펀드에 출자한 출자금은 투자금액 인정인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의무비율은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사업에 사용한 투자금액 중 산정되므로, 법 시행 후에는 펀드에 출자한 출자금이 투자 인정금액에서 제외됨
	5. 창투사 자본금 운용에 있어서도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가 20%로 제한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계정(자본금 등)에서는 상장투자 비율 제한되지 않으나, 그외 행위제한 저촉여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 등)는 확인 필요
	6. 현행 창업지원법에서는 조합이 해산함에 따라 GP가 처분하지 못한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는 인정투자에 포함되었는데 인정에서 불인정으로 변경된 것이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예고한 고시(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인정여부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중

구 분	질 의	답 변
	<p>7. 운영중인 벤처투자조합 중 일부가 결성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그 조합에서 투자한 금액은 투자의무비율에서 제외하는 것인지?</p> <p>7-1. 동일 창투사가 운영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이 자본금의 200% 이상이나, 그 벤처투자조합 중 일부가 결성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도, 총 자산에서 자본금이 제외되는지?</p> <p>7-2. 창투사가 총자산에서 제외되는 벤처투자조합(모태, 3년 미만 등)만 운영중이면서 그 출자금액의 합이 자본금의 200% 이상일 때는 총자산이 0으로 산정되는데 맞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의무비율 계산 시, “결성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투자조합”은 총자산(분모)에서 제외되므로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투자한 금액(분자)에서도 제외됨. 따라서, 결성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투자에 산정 ○ 창투사의 총자산 산정시 예외되는 조합(결성한지 3년 미만, 모태조합 출자 펀드 등)도 창투사 자본금의 200% 계산 시에는 포함하므로, 총자산에서 창투사 자본금이 제외됨 ○ 창투사가 총자산에서 제외되는 벤처투자조합만 운영중이나 그 출자액의 합이 창투사 자본금의 200% 이상인 경우, 투자의무비율 산정 시 총자산이 0이 됨 향후, 운영중인 조합 중 비모태조합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총자산에 산정함

구 분	질 의	답 변
	<p>7-3. 투자의무비율 관련하여, 벤처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달리 40%에 자본금은 들어가지 않나요?</p> <p>8. 현행 창업지원법 제17조제1항은 “창투사는 납입자본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인정투자에 사용한 경우에 그 금액의 범위에서 해외투자를 시작할 수 있고, 등록된 지 3년이 지난 창투사는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경우에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해외투자과 관련된 내용이 벤처투자법에 규정되어 있는지?였는데, 이 고시는 아직 확정안된 것인지 궁금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집행조합원이 창투사인 경우, 그 총자산(자본금+운영중인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합)의 40% 이상을 벤처투자해야 함 ○ 업무집행조합원이 창투사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하는 출자금액 합계의 40% 이상 및 각 조합의 20% 이상을 벤처투자해야 함 ○ 해외투자의 방법은 고시(안)에 따름 (해외기업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 해외투자 한도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 없음 ○ 현재 행정예고(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이며, 8월중 공포 예정 *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등

구 분	질 의	답 변
행위제한 (행위제한예외 포함)	1. 주요출자자 제작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행위제한에 포함이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의 자산으로 그 조합의 주요 출자자(또는 주요출자자가 제작하는 프로젝트)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는 것은 행위제한이나, 조합원 전원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 ○ 업무집행조합원인 창투사의 고유계정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행위제한으로 보지 않음
	2. 창투사이면서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도 창업벤처전문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나요? 2-1. 창투사가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업무집행사원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행위제한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투사이면서 창업기획자인 경우 창투사 규정과 창업기획자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데, 창업기획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한 행위에 포함되므로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없음 ○ 다만, 창투사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행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음
	3.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지와 관련하여, 기존법에서 허용하였던 창업보육센터를 위한 부동산의 소유는 불허가 된 것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소유 가능

구 분	질 의	답 변
기타 (규약변경 등)	4. 창투사가 신기사와 Co-GP로 신기술조합을 결성할수 있나요? 4-1. 창업기획자는 신기사와 Co-GP로 신기술 조합을 결성할 수 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투사, 창업기획자 모두 금융회사등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할수 없는데, 그 금융회사등에는 신기조합이 포함되므로 신기조합에 대한 지분 취득 및 소유 불가
	5. 비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가능한 것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투사는 영 제26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해 취득 및 소유가 가능하고, 그 부동산 중 업무용을 제외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가능
	1. 창투사도 GP로서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가요? 2. SAFE 표준계약을 제공해주시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투사는 개인투자조합에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에서 조건부 지분인수계약 샘플계약을 제공 중임

4. 벤처투자조합

구 분	질 의	답 변
등록요건	1. LLC가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가요?	○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법 시행 후 유한(책임) 회사는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조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도 벤처투자조합 결성 가능
	2.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금 총액이 조합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은 설립때만이 아닌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현재는 설립당시 1%로 하고 있어 유지라고 하면 기존 LLC도 운영조합에 맞게 자본증자를 해야 하나요?	○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조합 결성 금액"이란, 운영 중인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이 아니라 결성하려는 각 조합의 출자금액 기준임
	2-1. LLC의 자본금 요건이 각 펀드 결성할 때 해당펀드만을 기준으로 하고, 총 운용조합의 AUM이 아니다. 라고 이해 하면 되는 거죠? 2-2.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결성금액이 100억 원 이상일 때 자본금(출자금)이 조합 결성금액의 1% 이상이어야 하는데, 창업기획자가 LLC인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 법 시행 이후부터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 중 출자금액이 가장 큰 조합을 기준으로 비율을 유지할 필요 (예, 출자금 2억원인 LLC가 각 200억원, 400억원의 2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때에는 출자금을 6억원이 아닌 4억원까지 증자 후 유지) ○ 창업기획자는 그 회사유형(주식회사, 유한회사 등)과 상관없이, 벤처투자조합을 100억 원 이상으로 결성할 때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또는 사업에 출연(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결성금액의 1% 이상이

구 분	질 의	답 변
		어야 함 * (참고사항) 유한(책임)회사는 조합 결성금액이 100억원 미만이라도 출자금총액(자본금)이 1% 이상이어야 함
	3.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는 창투사, 신기사, LLC, 액셀과 함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자산운용사가 자회사인 창업투자회사와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 운영이 가능한가요?	○ 창투사와, 그 모회사(또는 계열회사)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는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참여 가능
	4. Fund of fund인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도 10%이상인 경우 각 조합원을 1인으로 산정 하나요?	○ 유한책임조합원 산정시 영 제34조제3호 나목에 따른 특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0% 이상 출자여부와 상관없이 각 조합원을 1인으로 산정함 (예, 조합원 10명인 벤처투자조합(FOF)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때에는 그 10명을 각 1인씩 산정)
	5. 업무집행조합원이 창투사와 창업기획자를 겸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벤처투자조합은 어떤 투자의무비율을 준수하나요? 5-1. GP가 창투사이자 창업기획자를 겸하고 있는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GP 유형을 둘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나요?	○ 창투사이자 창업기획자인 회사에 대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창업투자조합 또는 KVF가 있는 경우에는 창투사의 총자산에만 합산하고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에는 반영하지 않음 (이 경우, 겸업하는 자가 법 시행 이후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은 창투사로서 결성된다고 봄) ○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벤처투자조합을

구 분	질 의	답 변
		결성하는 창투자겸 창업기획자는 그 최초 결성조합 규약에 투자의 방법(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인지 여부)으로 결성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동일한 GP가 결성하는 조합에도 동일한 투자의 방법 유지
	6. 금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창투사가 세컨더리펀드를 조성하는거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없나요? 6-1. 앞으로도 세컨더리를 주목적으로 펀드조성이 가능한 것인지? 6-2. 해외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성 가능하나, 조합별 투자의무비율은 달성하여야 함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면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세컨더리, 해외투자, 중견투자 등에 제한 없음) * (참고)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는 20% 이내로 제한
	7. 프로젝트성 펀드(한 기업에 100% 투자) 결성이 가능한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조합이 모태출자 조합일 경우에는 모태 규약에 따르며, 모태 비출자 조합인 경우에는 100%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창업자, 벤처기업, 경영·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해당될 경우 가능함
	8. 벤처투자조합의 최소규모가 기존 30억원에서 20억으로 줄어든 것인가요? 기존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의 최소규모가 20억원으로 설정되었으므로,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조합

구 분	질 의	답 변
	도 20억 이상만 유지하면 되나요?	<p>도 약정총액을 20억원으로 감하는 것이 가능(단, 변경등록 신청)하며 해산시까지 20억 이상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약정총액 감액 시 변경등록하여야 함
	9. 신기술사와 Co-GP를 할 수 있는 GP의 유형이 제한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투자, 창업기획자, 신기술사, 외국투자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투자매매업자·집합투자업자와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참여 가능
투자의무비율	1. 벤처법이후에도 투자의무비율에 조합출자금 인정해주나요 ? 1-1. 창투자 기준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합이 200%이상인 경우에 총자산예외 적용할때 모태출자조합도 해당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의무비율은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사업에 사용한 투자금액 중 산정되므로, 법 시행 후에는 펀드에 출자한 출자금이 투자 인정금액에서 제외됨 ○ 창투사의 총자산 산정시 예외되는 조합(결성한지 3년 미만, 모태조합 출자 펀드 등)도 창투자 자본금의 200% 계산 시에는 포함하므로, 총자산에서 창투자 자본금이 제외됨

구 분	질 의	답 변
	2.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 지는 것 인가요? 2-1. 벤처투자조합별 의무투자비율이 20%이면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80%까지 가능해 지는지요? 2-2.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도 투자의무비율 달성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하나, 조합별 투자의무비율은 달성하여야 함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면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세컨더리, 해외투자, 중견 투자 등에 제한 없음) * (참고)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는 20% 이내로 제한
	3. 투자의무비율에서 출자금의 합이 약정총액 인가요? 납입액인가요?	○ 약정총액 기준
	4. 동일기업 투자한도 20% 변동있나요?	○ 해당 내용은 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며, 개별 조합 규약협의 시 반영하는 사항으로 보임
	5. 상장법인 투자 20% 제한도 각각 조합 별로 산정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20% 이내로 투자하여야 하고, ○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도 20% 이내에서 투자

구 분	질 의	답 변
	6. M&A 전문 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 상장사의 경영권인수 투자를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6-1. 기존 KVF 펀드에서는 M&A펀드의 경우 벤처/중소기업인 상장사 경영권 인수가 가능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벤처 투자조합은 이것이 불가능한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20% 이내로 제한
	7. 투자의무비율이 총자산의 40% 이상을 벤처기업 창업자에 투자해야되는데 결성된지 3년이 지나지않은 조합이라 총자산에외 적용될경우 3년미만조합에서 투자한 벤처기업은 투자의무비율이 인정되나요?	○ 투자의무비율 계산 시, "결성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투자조합"은 총자산(분모)에서 제외되므로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투자한 금액(분자)에서도 제외됨. 따라서, 결성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투자에 산정
	8. 협회에서 청산조합의 잔여자산을 GP에서 인수할경우 인정투자라고 안내받았는데요, 원래 안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8-1. 총자산 산정시 펀드출자금은 현재까지 출자한 금액이 아닌 약정금액 기준인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예고한 고시(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인정여부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중 ○ 출자금액은 약정총액 기준

구 분	질 의	답 변
	9. 중견기업의 경우 기본적인 창업자 벤처기업 투자 20% 달성 후에 가능한건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의무비율 달성과 선후관계는 없으나, 해당 조합이 3년이 지난 날까지 투자의무비율을 준수
	9-1. 조합별 투자의무비율을 준수하면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도 가능한가요?	
	10. 운영중인 벤처투자조합 중 일부가 결성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그 조합에서 투자한 금액은 투자의무비율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의무비율 계산 시, "결성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투자조합"은 총자산(분모)에서 제외되므로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투자한 금액(분자)에서도 제외됨. 따라서, 결성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투자에 산정
	10-1. 동일 창투사가 운영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이 자본금의 200% 이상이나, 그 벤처투자조합 중 일부가 결성되지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도, 총자산에서 자본금이 제외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투사의 총자산 산정시 제외되는 조합(결성한지 3년 미만, 모태조합 출자 펀드 등)도 창투사 자본금의 200% 계산 시에는 포함하므로, 총자산에서 창투사 자본금이 제외됨
	10-2. 창투사가 총자산에서 제외되는 벤처투자조합(모태, 3년 미만 등)만 운영중이면서 그 출자금액의 합이 자본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투사가 총자산에서 제외되는 벤처투자조합만 운영중이나 그 출자액의 합이 창투사 자본금의 200% 이상인 경우, 투자의무비율

구 분	질 의	답 변
	200% 이상일 때는 총자산이 0으로 산정되는데 맞는지?	<p>산정 시 총자산이 0이 됨 향후, 운영중인 조합 중 비모태조합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총자산에 산정함</p>
	10-3. 투자의무비율 관련하여, 벤처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달리 40%에 자본금은 들어가지 않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집행조합원이 창투사인 경우, 그 총자산(자본금+운영중인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합)의 40% 이상을 벤처투자해야 함 ○ 업무집행조합원이 창투사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하는 출자금액 합계의 40% 이상 및 각 조합의 20% 이상을 벤처투자해야 함
	11. 의무투자비율이 원래 40% 아닌가요? 이번 벤처법 후 20%로 하향된건가요? 이 경우 규약을 변경해야 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중인 벤처투자조합 각각의 투자의무비율은 20% 이상이며, 운영중인 벤처투자조합의 총 출자금액 기준으로는 40% 이상을 벤처투자해야 함 ○ 법 부칙 제6조(개인투자조합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에 등록된 창투/KVF는 동 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구 분	질 의	답 변
		<p>보게 되므로 법 시행에 따라 무조건 규약을 변경할 필요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이 법에 따라 어떤 조합의 투자자의 무비율을 20%로 하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약을 변경하고 우리부에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함
	12.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 모두 창투사일 때 투자자의무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창투사가 하나의 벤처투자조합에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때, 각각의 창투사의 총자산에 해당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을 포함
	13. 창업자란 설립 후 몇 년까지의 기업을 말하나요? 13-1. 초기창업자와 창업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하며, ○ “초기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를 말함
행위제한 (행위제한예외 포함)	1. 주요출자자 제작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행위제한에 포함이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의 자산으로 그 조합의 주요출자자(또는 주요출자자가 제작하는 프로젝트)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는 것은 행위제한이나,

구 분	질 의	답 변
	1-1. 조합의 주요출자자 주식 지분매입이 제한이면 주요출자자 제작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p>조합원 전원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p>
	2. 벤처투자조합 GP가 이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GP로서 해당 PEF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해당하지 않는것이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창투사인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GP로서 해당 PEF 지분을 소유 가능(행위제한 예외)하나, 창업기획자는 불가 ○ LLC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제한 없음
	3.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벤처투자법 시행령(안)을 보니 금융기관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취득을 할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투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금융회사등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제한됨
	4. 업무집행조합원이 창투사인 벤처투자조합이, 그 창투사의 자회사인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기업(이 질문에서 “피투자기업”이라고 함)에 후행투자가 가능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투사(모) - 창업기획자(자) 관계일 때, 창투사(운영하는 벤처투자조합 포함)와 창업기획자를 합하여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행위제한에 해당되나,

구 분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 행위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30% 이상으로도 투자 가능
기타 (규약변경 등)	<p>1. 벤처법 시행 이후 현재 운용 중인 창투조합은 기존의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법 시행에 맞춰 변경되는지 / 이에 따른 규약 변경이 필수인지 / 필수라면 중기부나 모태펀드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p> <p>1-1. 기존 운용중인 창투조합이 벤처투자조합으로 운용되면 변경해야할 사항이 있는 건지?(규약 , vics등록사항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부칙 제6조(개인투자조합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에 등록된 창투/KVF는 동 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보게 되므로 법 시행에 따라 무조건 규약을 변경할 필요 없음 ○ 다만, 그 외 실질적인 규약변경(출자자, 출자금액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등록 신청 ○ 또한, 이 법에 따라 어떤 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20%로 하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약을 변경하고 우리부에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함 ○ 모태자조합은 한국벤처투자와 별도 규약 협의하시기 바람 (모태자조합 기준규약)

구 분	질 의	답 변
	<p>2. 8/12부터 벤처투자조합으로 결성신청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표준규약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p> <p>2-1. 8월 12일 결성계획서 작성시 기존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 으로 사용가능한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규약은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행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3. 출자자 별로 기준수익률/성과보수 차등적용 가능한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법에 규정된 바 없음
	4. SAFE 표준계약서를 제공해주시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에서 조건부 지분인수계약 샘플계약서를 제공 중임
	5. 현행법상 LLC의 경우 본계정 감사보고서 제출 혹은 검사, 평가를 하고있지 않은데요. 벤처투자법에서도 현행과 동일한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LC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를 우리부에 등록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계정에 대한 감사보고서 검사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겠으나, ○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을 위해서는 요청할 수 있음 (자본금, 부채비율 등 확인)

구 분	질 의	답 변
	<p>6.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종전에는 고시에서 출자금 모집업무 위탁을 금지하였는데 시행예정법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제52조 제4항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제3자에게 업무의 위탁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출자금 모집 업무도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p>	<p>○ 행정예고한 고시(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그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중</p>